

# 2020년도 제5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자: 2020. 4. 17.(금요일)
- 방 법: 온라인심의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 위원(분과위원장), 박성호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의결안건〉 ※ 안건 검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83건(안건번호 제2020-10966호~11025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Ⅲ. 주요내용

- A 위원: 안전번호 제2020-10966호~11025호(83건의 게시물)는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방송)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본 사건은 웹하드사이트(◆◆◆◆, ♣♣♣♣ 등)에 불법복제물(방송)들을 불법 공중송신한 사건으로 당해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의견임.
- C 위원: 본 심의 대상 60개의 안전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통하여 영상 저작물 83개를 불법 복제하여 공중에 영리를 위해 전송하는 것이다. 자료를 통해 확인해볼 때 영리 목적으로 공중에 전송한 사실이 있고 저작물의 공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므로 위원회에서 저작권법에 따라 시정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D 위원: 이번에 불법 복제 전송이 문제된 심의안전들은 2020년 방송된 방송콘텐츠에 관한 사안들로서, 그 중에는 예컨대 방송 슬기로운 의사생활(2020), 방송 방법(2020)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불법 복제 전송물들은 모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검토보고서의 원안대로 모두 시정권고 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제58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4. 17.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박성호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